

주요심결사례

2002. 5. 9.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3개 지방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2단체0006)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01년도 전체 계약건수 770건 중 673건(87.5%)의 단체수의계약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대전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은 1997년부터 2001년말까지 단체수의계약 정보를 문서, 인터넷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합원들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으며, 서울특별시기계공업협동조합은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정한 연간배정기준표대로 물량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개별 수주활동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부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한 사실이 있고,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또한 조합원별 연간배정기준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합회가 정한 물량배정기준에 대한 품목별, 조합원사별 산정공식만을 정하고 있으며, 물량배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수주활동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부 조합원에게 배정하였고, 대전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은 개별 수주활동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부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한 사실이 있으며, 2001. 7. 12.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2001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위반되는 "수처리기계배정인"과 "세부규칙"을 의결하여 시행하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2002. 5. 10.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굿모닝시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1광고2565)	(주)굿모닝시티는 2001. 11. 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기간동안 매일경제신문 등 5개 일간지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소재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광고 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지하 2층이 지하철과 바로 연결!(지하에 대형 만남의 광장 건설예정)”이란 표현을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에 광고지면의 20분의 1이상의 크기로 원 광고와 같은 크기인 전면광고를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제주도서점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2002광사0234)	제주도서점조합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서적 도·소매상인 광장서점이 2001. 3월초 제주 서귀여고에 교육방송 교육교재를 정가보다 10% 할인한 가격으로 납품하자 2001. 3. 13. 동 서점에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징구 함과 동시에 벌금 500만 원을 조합기부금 명목으로 요구함으로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2001. 10. 11. 정기총회시 광장서점과의 거래중지 결의 및 광장서점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던 잡지를 자신이 직접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1. 11. 14. 임시총회를 개최, 광장서점과 거래를 하는 조합원은 제명조치를 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광장서점과 거래를 계속하자 2001. 11. 27.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의 결의사항에 적극 동참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명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 받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의 문안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2002. 5. 1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4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2유거0457)	엘지카드(주), 삼성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외환신용카드(주)는 1998. 2. 1.~1998. 3. 2.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수수료율, 1998. 1. 5.~1998. 2. 10. 기간 동안 할부판매수수료율(이하 ‘할부수수료율’이라 한다)을, 1998. 1. 15.~1998. 3. 2. 기간 동안 연체이자율을 거의 동일하게 인상한 사실이 있으며, 1998년초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각각 인상하기 이전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시점에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민카드의 내부문건인 '금융시장변화에 따른 대응방안보고' (97. 12. 9.) 중 '타사현황'에 의하면, 할부수수료율 인상에 관하여 삼성카드, 엘지카드는 "4%p 인상, '98. 1. 1. 시행 예정", 외환카드는 "당사 인상시 시행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회사의 '금융시장변화에 따른 대응방안보고(2차)' (98. 1. 9)에 의하면, 현금서비스이자율 인상을 "1.2~3.1%(연 23.80%) 수준으로 기결재, 시행보류, 타사수준으로 인상내용을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타사와 공조하여 추진 예정이었으나 타사의 비협조로 시행 불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외환카드의 '98. 1. 6.자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피심인들의 현금서비스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의 예정 변경요율 및 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고, 삼성카드의 내부문건인 '경영현안 대책에 따른 문제점'에 의하면, "할부수수료의 인상은 반드시 업계 공동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만일 당사 단독으로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고객들의 사용기피 및 ... 우량회원의 대량 이탈이 예상된다. ... 연간 1조원 수준의 취급고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회사의 '금리급등 관련 동업타사 동향' (97. 12. 11.)에 의하면, 피심인들을 포함한 카드사들의 할부수수료율 인상, 할부기간 단축, 신용공여기간 단축, 대금지급기일 연장 등에 대한 예정 자료가 기재되어 있고, 할부수수료의 경우, 삼성, 엘지, 외환은 "수수료 4% 인상", 국민은 "수수료 3% 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엘지카드의 내부문건인 '98년 영업방향 Consensus Building' (97. 12. 17. 전략기획팀)에 의하면, "경쟁사 동향(삼성)"이라는 항목하에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신규 모집 목표, 영업인력 운영 등 삼성카드의 구체적인 내부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문건 별지에는 '각사별 비상조치 현황(97. 12. 16. 기준 인상요율)'이라는 제목으로 피심인들을 포함한 카드사들의 할부수수료율 인상, 현금서비스수수료율 인상, 신용공여기간 단축, 대금지급기일 연장 등에 대한 예정 자료가 기재되어 있고, 할부수수료율의 경우, 앞서 본 삼성카드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기재</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지카드(주) : 6,786백만원 · 삼성카드(주) : 6,057백만원 · 국민신용카드(주) : 6,959백만원 · 외환신용카드(주) : 3,549백만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되어 있으며, 같은 회사의 다른 내부문건인 '97년 실적분석/98년 주요전략보고' (97. 12. 24)에 의하면, "할부이자, 현금서비스수수료, 연체이자 추가인상추진", "이자제한법 개정(24-40%)에 따라 업계공통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시적인 정보교환 활동을 해음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 위반	
한국엠에스디(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2001공동2298)	한국엠에스디(주)는 1998. 4월~2000. 12월 기간중 자기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을 국내 종합병원 등에 납품함에 있어서 종합병원 등의 의사 및 종사자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총 547회에 걸쳐 241,585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총 547건 중 17건에 대해 접대비의 지출목적 및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자기 의약품의 채택, 처방량 증대, 경쟁품사입의 억제 등을 위해서 과대한 식사와 술, 골프 등의 접대를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2002. 5.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미디어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1구사2634)	(주)미디어월은 2001. 9.~10월 기간중 자기가 발행하는 대구벼룩시장 등에 대구벼룩시장을 홍보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 "국내 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생활정보 신문", "마감한 줄광고를 새벽2시에 신문에 담아 배포하는 벼룩시장", "1995년 업계 최초로 PC통신상의 정보제공"이라고 각각 표현하였으며, 자기의 경쟁사에 대하여 "눈거리고 이용식으로 대구시민을 우롱", "교묘하게 꾸며 악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간교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각각 표현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 및 자기가 발행하는 대구벼룩시장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2. 5. 2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시험정보은행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2광고0216)	한국시험정보은행은 2002. 1. 24. 조선일보를 통하여 민간자적인 발명기술지도사에 대하여 기사식 광고를 하면서 “발명기술지도사란?” 소제목하에 “기업의 직무발명특허 또는 산업재산권의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 또는 발명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특별활동교사로 활동하거나...”라고 표현하고, “발명기술지도사에 합격하면?”이라는 소제목하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각종 학원의 관계자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라고 광고를 하면서 발명기술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치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2. 5. 2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2광고0337)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은 2001. 11월부터 2002. 1월 기간중 일간신문 및 전단 등을 통하여 자기의 위성방송서비스인 “스카이라이프” 예약가입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 “스카이라이프는 수신기만 갖추시면 KBS, MBC, SBS등의 공중파방송은 물론 영화, 음악, 청소년, 여성, 스포츠, 뉴스 등 140여개의 채널을 스스로 선택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국내 최초의 쌍방향데이터방송으로 정보검색은 물론 홈쇼핑까지 TV 한 대로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쌍방향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게임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획기적인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리모콘만 누르면 홈쇼핑, 이메일전송 등이 가능한 SkyTouch 등 각종 멀티미디어서비스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DVD수준의 고화질, CD수준의 고음질로 기존의 어느 방송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